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기업
글로벌 No.1 서울교통공사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 시스템구축 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계획 및 기준

2019. 6.



서울교통공사
Seoul Metro

| 신호처

목 차

1. 용역 개요	1
2. 사업수행 용역업체 선정	3
3. 사업수행능력 평가	7
4.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8
5. 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철도신호, 정보통신, 설비분야)	9
5-1. 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전력분야)	21
<별지 서식 1호>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36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37
[양식 1 ~ 양식 1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양식	40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 시스템구축 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계획 및 기준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 시스템구축 설계 용역

나. 목 적

본 사업은 호선 및 운전, 신호, 전력, 통신, 설비 등 분야별로 분리된 지하철 관제센터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통합 구축을 위한 설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업체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 최적의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함.

다. 주요 과업내용

1) 과업위치

- 서울지하철(1~9호선) 전 구간 및 연계구간을 제어감시 하는 종합관제소(3개소)
- 대외기관과의 인터페이스 및 예비관제(교육용) 기능 포함

2) 과업규모 : 서울지하철 1~9호선 신호, 전력, 통신, 기계, PSD 등의 지능형 SMART 통합관제 시스템구축을 위한 설계

3) 과업내용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등 포함) 결과의 검토
- 기본설계의 설계조건 및 통합관제(예비관제 포함) 구축방안 등의 결정과 설계
- 안전성 분석 시행
- 주요자재 기준 및 설계기준 결정과 설계
-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자료 작성
- 기본공정표 작성
- 설계도서 작성 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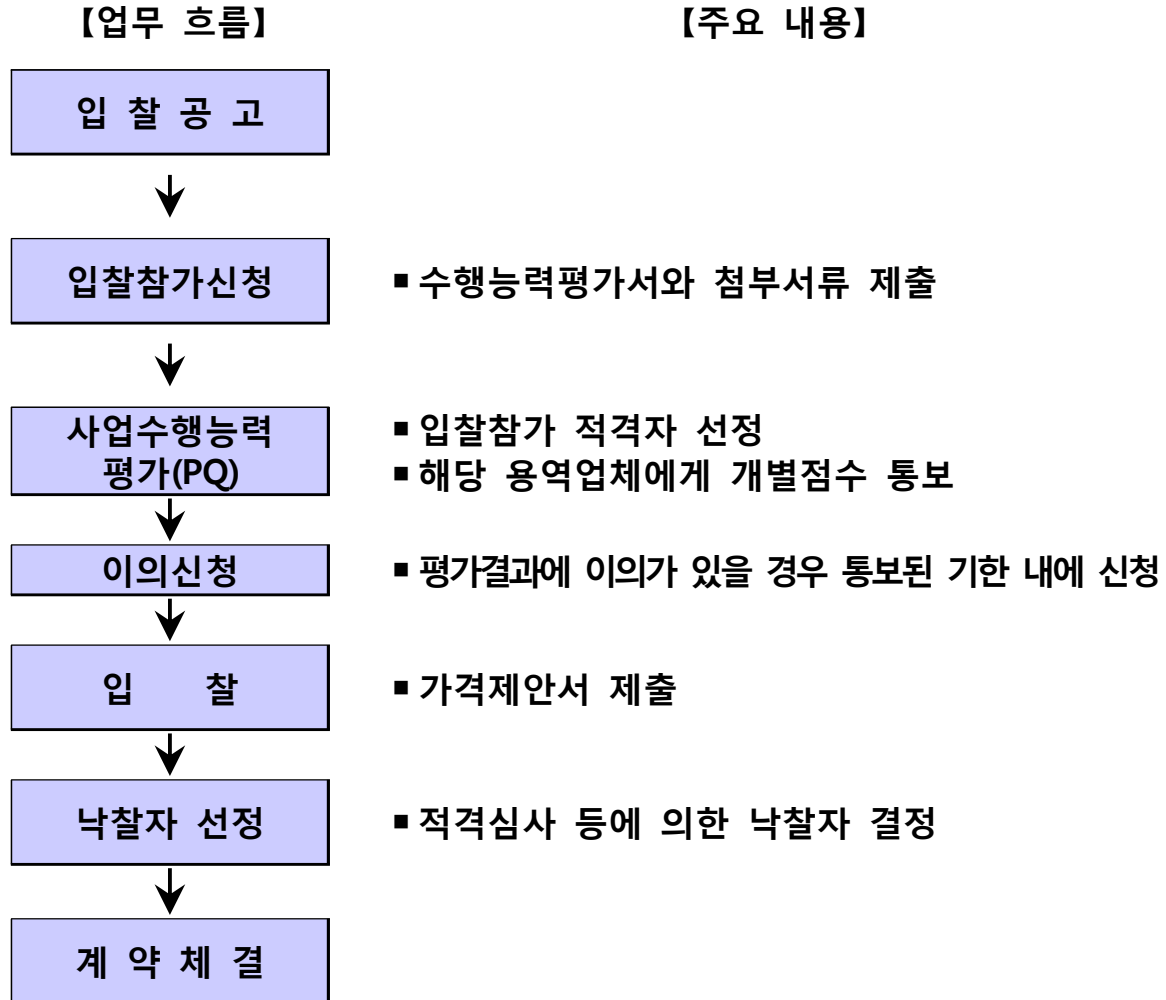
라. 입찰방식 : 입찰자격사전심사(PQ)에 의한 적격심사 낙찰제

마. 용역 수행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함.

사업책임기술자 (철도신호분야) · 평가 1인 : 특급기술자 (기술사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			
철도신호분야	전력분야	정보통신분야	설비분야
▶ 책임기술자(1인) · 특급기술자 이상 · 평가 1인	▶ 책임기술자(1인) · 특급기술자 이상 · 평가 1인	▶ 책임기술자(1인) · 특급기술자 이상 · 평가 1인	▶ 책임기술자(1인) · 특급기술자 이상 · 평가 1인
▶ 참여기술자(2인) · 중급기술자 이상 · 평가 1인	▶ 참여기술자(2인) · 중급기술자 이상 · 평가 1인	▶ 참여기술자(2인) · 중급기술자 이상 · 평가 1인	▶ 참여기술자(2인) · 중급기술자 이상 · 평가 1인

2. 사업수행 용역업체 선정

가. 선정절차



나. 입찰참가자격

- 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서
 - 신호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철도신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 전력분야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업체
 - 통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의한

-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 설비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설비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 2) 공동도급은 총 4개 업체 이내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함.

구분	신호	전력	통신	설비
분담비율(%)	52.67	11.89	11.70	23.74

- 3) 입찰참가자는 위 각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행실적(능력)평가 적격성 심사 통과 후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다. 적격자 선정

- 1) 당해 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함.
- 2)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라. 낙찰자 결정방법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8호, '18.12.1.)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별표 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2018.12.13.)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별표1의 3]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7호, 2018.11.5.)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2017.08.10.)

2)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 ▶ 수행능력(68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 + 계약질서준수(-1)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및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67\text{점}$	67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나. 경영 상태	○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	
다. 입찰 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라.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전력기술관 리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마. 계약 질서 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계		100	

- ※ 당해 용역의 수행능력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의 별표5에 의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별표1의 3]을 근거로 평가함.
- ※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협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단,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평가함.
-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는 평가 제외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함.
- ※ 지역업체 참여도(3점)은 적용하지 않으며, 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함.
- ※ 경영상태(2점)는 사업수행능력에서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어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함.

3.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 평가기준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37조(2017.12.29)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2018.12.13.)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참조, 세부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평가함.
-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2017.04.07)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7호, 2018.11.5.)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조, 세부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평가함.
-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8호, '18.12.1.)

나. 평가절차

- 1) 계약부서에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밀봉된 상태로 발주부서로 송부함.
- 2) 평가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항목별 배점기준 의하여 발주부서 자체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업체가 제출한 사업능력평가서를 평가함.
- 3) 위 배점 한도 평가 결과로 가격입찰 참가 적격자를 결정, 계약부서에 통보함.

다. 일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작성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기준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첨부된 증빙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2)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으며 실적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3)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가) 평가방법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장 37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제1호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본 용역의 특성에 맞게 평가기준을 일부 조정한 붙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함.

나)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4)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 내용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나)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름.

4.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가.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5.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의 [붙임 1] 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과 같음.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음.

나. 재무비율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 년도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 회계사의 검토 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자료 제공을 받은 관련협회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5.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철도신호, 정보통신, 설비분야 해당)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가. 참여 기술자 능력	가) 경력 (1) 유사 용역 수행실적 (2) 전문화 정도 (3) 업무 여유도 나) 그 밖의 추가 항목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가) 경력(유사용역 수행실적) 나) 보유기술 다)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라) 재정상태 건실도 마) 그 밖의 추가항목
다. 참여의향서	

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사업의 구분

- 본 사업은 철도분야 신호, 정보통신, 설비 등의 다양한 공종의 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으로 특수 또는 복잡한 사업으로 구분하고,
-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으로 대형사업에 해당하므로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은 복잡, 특수한 사업의 대형사업의 배점 기준을 적용함.

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인정범위

- 철도신호분야 : 철도신호설비 개량/신설 설계용역 실적
- 정보통신분야 : 철도정보통신설비 개량/신설 설계용역 실적
- 설비분야 : 기계 또는 PSD 설비 개량/신설 설계용역 중 자동제어가 포함된 실적

다.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 참여기술자능력	(1)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 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 (기간)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의 경력 관련 자료 (증명서 및 확인서 등) ◦ 복합공종인 경우 유사 사업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실적 인정
	(2) 전문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참여 기술자의 전문성
	(3) 업무 여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 사업과 다른 엔지니어링 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건수 및 참여율
	나)그 밖의 추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사업수행 기술인력의 잔류여부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가)경력(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수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 복합공종인 경우 유사 사업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실적 인정
	나)보유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 기술력의 확보 여부 ◦ 신기술 특허 등의 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실적 등과 관련한 당해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
	다)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라)재정상태 건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업체가 현재 부도 및 파산상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의 여부
	마)그 밖의 추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의 광역(일반, 고속 포함) 및 도시철도에서 수행한 유사 사업 실적
다. 참여의향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과업의 이해도 및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사업에 대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충족 여부 - 사업 수행과정 전·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평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여부

라. 사업수행능력의 항목별 배점 기준 (복잡, 대형)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항목별 배점	점 수	비 고
가. 참여 기술자 능력	가)경력	(1)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사 업 책임기술자	7	
			분야별 책임기술자	6	
			분야별 참여기술자	5	
			소 계	18	
		(2) 전문화 정도	사 업 책임기술자	7	
			분야별 책임기술자	6	
			분야별 참여기술자	5	
			소 계	18	
		(3) 업무 여유도	사 업 책임기술자	7	
			분야별 책임기술자	6	
			분야별 참여기술자	5	
			소 계	18	
	나)사업 수행자의 용역사업수행 기술인력의 잔류여부			2	
	소 계			56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가)경력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19		
	나)보유기술		5		
	다)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3		
	라)재정상태 건실도		9		
	마)업체의 도시철도에서 수행한 유사사업 실적		2		
	소 계		38		
다. 참여 의향서	가)과업이해도		2		
	나)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2		
	다)접근방식의 창의성		2		
	소 계		6		
총계			100		

1. 공동 입찰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 참여 각 업체의 지분율을 반영 합산한 수치로 평가
 각 항목별 평가 산식 : 입찰참가자 점수 = (A사 평점×지분율) + (B사 평점×지분율) + ...

2. 복합공종 엔지니어링사업 인정범위
 - 복합공종의 경우 전체 사업 중 분야별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참여비율 만큼만 인정

마.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참여기술자 능력(총 배점 : 56점)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사업 책임기술자(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1인), 분야별 참여기술자(1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함.

가) 경력(54점)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18점)

- 절대평가방식으로 최근 5년간 수행한 실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기술등급(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적용)
 - 사업 책임기술자 : 특급기술자(기술사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
 - 분야별 책임기술자 : 특급기술자 이상
 - 분야별 참여기술자 : 중급기술자 이상
- 사업 참여 기술자별 세부 배점 기준
 - 사업 책임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배점	7.00	6.65	6.30	5.95	5.60

-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배점	6.00	5.70	5.40	5.10	4.80

- 분야별 참여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배점	5.00	4.75	4.50	4.25	4.00

(2) 전문화 정도(18점)

○ 상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평가함.

구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등급별 계수	50	40	30	20	10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순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예) 참여기술자의 전문화 정도 평가 배점이 18점일 경우

- 3개 분야, 사업 책임기술자 7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6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5점인 경우

업체	인력구성			산정방식 및 점수				
				산정방식	순위	점수	총점	
A	사업 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times 1 = 50$	50	1	7.00	18.00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3명	$50 \times 3 = 150$	150	1	6.00	
	분야별 참여기술자	기술사	3명	$50 \times 3 = 150$	150	1	5.00	
B	사업 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times 1 = 50$	50	1	7.00	17.75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3명	$50 \times 3 = 150$	150	1	6.00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급 기술자	3명	$40 \times 3 = 120$	120	2	4.75	
C	사업 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times 1 = 50$	50	1	7.00	17.15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2명	$50 \times 2 = 100$	140	3	5.40	
		특급 기술자	1명	$40 \times 1 = 40$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급 기술자	3명	$40 \times 3 = 120$	120	2	4.75		
D	사업 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times 1 = 50$	50	1	7.00	16.85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times 1 = 50$	130	4	5.10	
		특급 기술자	2명	$40 \times 2 = 80$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급 기술자	3명	$40 \times 3 = 120$	120	2	4.75		
E	사업 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times 1 = 50$	50	1	7.00	15.80
	분야별 책임기술자	특급 기술자	3명	$40 \times 3 = 120$	120	5	4.80	
	분야별 참여기술자	고급 기술자	3명	$30 \times 3 = 90$	90	5	4.00	
F	사업 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times 1 = 50$	50	1	7.00	15.55
	분야별 책임기술자	특급 기술자	3명	$40 \times 3 = 120$	120	5	4.80	
	분야별 참여기술자	중급 기술자	3명	$20 \times 3 = 60$	60	6	3.75	

(3) 업무 여유도(18점)

-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0.2점씩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함. 다만,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자가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 해당 업체의 결격으로 하되, 기 배치된 다른 사업 현장의 용역이 당해용역 입찰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사업 수행자의 용역사업수행 기술인력의 잔류여부(2점)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용역수행조직 구성 및 인력투입의 적정성에 대한 절대평가

업체	인력구성			등급	비고
A	사업 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1등급	
	분야별 책임기술자	특급기술자 이상	3명		
	분야별 참여기술자	중급기술자 이상	6명		
B	사업 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2등급	
	분야별 책임기술자	특급기술자 이상	3명		
	분야별 참여기술자	중급기술자 이상	5명		
C	사업 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3등급	
	분야별 책임기술자	특급기술자 이상	3명		
	분야별 참여기술자	중급기술자 이상	4명		
D	사업 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4등급	
	분야별 책임기술자	특급기술자 이상	3명		
	분야별 참여기술자	중급기술자 이상	3명		

※ 상기 인력구성에 대한 등급 이외는 모두 4등급 미만으로 평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배점	2.00	1.90	1.80	1.70	1.60

2) 업체능력 및 신용도(총 배점 : 38점)

가) 경력(19점)

- 상대평가방식으로 하며, 당해 업체의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 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 중 1천만원 이상의 사업수행 건수만 한정 합산하여 평가결과는 최상위 업체부터 하위 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 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함.
- 단, 인정 범위는 유사 엔지니어링사업(기술자 경력 사항의 유사범위) 중 설계용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배점	19.00	18.05	17.10	16.15	15.20	14.25

나) 보유기술(5점)

- (1) 절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분야별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합산하여 평가 할 수 있음.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함.
- (2) 건당 점수 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함.
 - 신기술에 대한 특허 : 1.0점/건
 -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 0.7점/건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배점(건당)	특허:1.0 / 실용신안:0.7	특허:0.8 / 실용신안:0.56	특허:0.6

다)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3점)

- (1)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함.
- (2)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음.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3)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음.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

라) 재정상태 건실도(9점)

- (1) 절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3:4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함.
- (2) 자본비율의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분야별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함.

- 자본비율(2.7점)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배점	2.70	2.57	2.43	2.30	2.16

- (3) 유동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분야별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하여 평가함.

- 유동비율(2.7점)

구분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배점	2.70	2.57	2.43	2.30	2.16

(4)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으로 평가,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신용평가등급(3.6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회사채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0
배점	3.60	3.42	3.24	3.06	2.88	0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마) 업체의 도시철도(수도권전철, 고속철도, 일반철도, 경전철 포함)에서 수행한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실적(2점)

- 절대평가방식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당해 업체의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사업(기술자 경력 사항의 유사범위) 중 전국의 도시철도에서 수행한 1천만원 이상 사업 실적금액만 한정 합산하여 평가함.
- 단, 인정 범위는 기술자 경력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중 전국의 도시철도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
 - 도시철도에서 수행한 설계용역 실적금액(2점)

구분	10억 이상	8억 이상	6억 이상	4억 이상	2억 이상	2억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배점	2	1.9	1.8	1.7	1.6	1.5

3). 참여의향서(총 배점 : 6점)

참여의향서에 대한 평가는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2페이지 이내로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과업의 이해도, 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접근 방식의 창의성을 평가함.

가) 과업이해도는 발주청의 요구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 결과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 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 업체(혹은 기술자)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 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함.

- 과업이해도(2점)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배점	2	1.9	1.8	1.7	1.6	1.5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 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 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 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함.

- 예상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책(2점)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배점	2	1.9	1.8	1.7	1.6	1.5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은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으로 평가 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 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 업체(혹은 기술자)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 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함.

- 접근방식의 창의성(2점)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배점	2	1.9	1.8	1.7	1.6	1.5

5-1.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전력분야 해당)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인정범위

- 전력분야 : 철도전력설비 개량/신설 설계용역 실적

※ 철도전력설비 범위 : 철도 및 발전, 송배전 시설, 석유화학 플랜트, 제철공정 시설로 한정

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참여 전력 기술인(50)	책임기술자 (30)	자격	5	절대평가
		경력	10	
		유사용역실적	15	
	참여기술자 (20)	자격	5	절대평가
		경력	5	
		유사용역실적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실적금액	10	절대평가
		실적건수	5	
신 용 도 (10)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설계업체	4	절대평가
		참여전력 기술인	3	
	재정상태 건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4	절대평가
	기수개발 투자실적		8	
	교육실적		3	
업 종 첨 단 문 도 (10)	책임기술자		6	절대평가
	참여기술자		4	
합 계			100	
감점	부실벌점		5	절대평가

나.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참여자 기술자 (50)	책임기술자 (30)	등급	절대평가	5	특급	고급	중급	초급	
					5	4.5	4	3.5	
		경력	10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10		9	8	7	6		
	유사용역 실적	절대평가	15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15	13.5	12	10.5	9	
참여기술자 (20)	등급	절대평가	5	특급	고급	중급	초급		
				5	4.5	4	3.5		
	경력	5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5		4.5	4	3.5	3			
유사용역 실적	절대평가	10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0	9	8	7	6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실적금액	절대평가	10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설계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				
					구분		점수		
					100%이상	10			
					80%이상 100%미만	9			
					60%이상 80%미만	8			
					40%이상 60%미만	7			
					40%미만	6			
		실적건수	절대평가	5	최근 5년간 설계용역비 1천만원 이상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실적건수		점수		
					3	5			
					2	4			
					1	3			
					0	2			
신용도 (10)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설계업체	절대 평가	4 3	- 설계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 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전력							

		기술인			-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설도	자본비율	절대 평가	1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 당해 설계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2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 당해 설계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1000%이상</td> <td>100%미만 75%이상</td> <td>75%미만 50%이상</td> <td>50%미만 25%이상</td> <td>25%미만</td> </tr> <tr> <td>점 수</td> <td>1.0</td> <td>0.85</td> <td>0.70</td> <td>0.55</td> <td>0.4</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100%이상</td> <td>100%미만 75%이상</td> <td>75%미만 50%이상</td> <td>50%미만 25%이상</td> <td>25%미만</td> </tr> <tr> <td>점 수</td> <td>2.0</td> <td>1.7</td> <td>1.4</td> <td>1.1</td> <td>0.8</td> </tr> </table>	구 분	10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구 분	10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절대 평가	4	-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5년이하</td> <td>5년초과 10년이하</td> <td>10년초과 20년이하</td> </tr> <tr> <td>특 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r> <td>전력신기술</td> <td>100%</td> <td>80%</td> <td>-</td> </tr> </table> <p>※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p> <p>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p>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기술개발 투자실적		절대	8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																								

		평가		울(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8	7.2	6.4	5.6	4.8
	교육실적	절대 평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설계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1)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3점 2)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5점 					
업 무 중 복 도 (10)	책임기술자	절대 평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1)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5점씩 감점 					
	참여기술자	절대 평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1)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1점씩 감점 					
합 계			100						

다.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감점	부실벌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 (설계업체 및 책임기술자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였으나 조사 및 협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2	1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산출의 소홀(해당 공종의 참여전력기술인에 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수량 산출의 소홀로 인하여 공종별로 10%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 2 - 설계수량이 공종별로 10%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 ○ 설계도서의 작성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 - 설계도서간의 불일치, 일부누락 또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2 -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현장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1 ○ 기자재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의 부실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기자재의 선정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3 - 주요기자재의 품질·규격 등 적합성 검토 소홀로 인하여 기자재의 재선정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 용역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예정기술인이 용역 과업수행시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3 - 참여기술인의 업무범위 및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업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된 참여전력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설계업체에 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참여전력기술인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3 - 동일자격 참여전력기술인을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교체한 경우 2 	

[별표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전력 기술인	(1) 책임기술자 (가)자격 (나)경력 (다)실적	50 [30] (5) (1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의 종류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평가 																						
	(2) 참여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20] (5) (5) (10)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 실적금액	[1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설계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점 수</th> </tr> </thead> <tbody> <tr> <td>100%이상</td> <td>10</td> </tr> <tr> <td>80%이상 100%미만</td> <td>9</td> </tr> <tr> <td>60%이상 80%미만</td> <td>8</td> </tr> <tr> <td>40%이상 60%미만</td> <td>7</td> </tr> <tr> <td>40%미만</td> <td>6</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설계용역비 1천만원 이상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실적건수</th> <th>점 수</th> </tr> </thead> <tbody> <tr> <td>3</td> <td>5</td> </tr> <tr> <td>2</td> <td>4</td> </tr> <tr> <td>1</td> <td>3</td> </tr> <tr> <td>0</td> <td>2</td> </tr> </tbody> </table>	구 분	점 수	100%이상	10	80%이상 100%미만	9	60%이상 80%미만	8	40%이상 60%미만	7	40%미만	6	실적건수	점 수	3	5	2	4	1	3	0	2
	구 분	점 수																							
100%이상	10																								
80%이상 100%미만	9																								
60%이상 80%미만	8																								
40%이상 60%미만	7																								
40%미만	6																								
실적건수	점 수																								
3	5																								
2	4																								
1	3																								
0	2																								
(2) 실적건수	(5)																								
다. 신용도	(1)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설계업체 (나) 참여전력 기술인	[10] (7) (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2) 재정상태 건설도 (가) 자본비율	[3] (1.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 당해 설계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나) 유동비율	(2.0)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 당해 설계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100%이상</td> <td>100%미만 75%이상</td> <td>75%미만 50%이상</td> <td>50%미만 25%이상</td> <td>25%미만</td> </tr> <tr> <td>점 수</td> <td>1.0</td> <td>0.85</td> <td>0.70</td> <td>0.55</td> <td>0.4</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100%이상</td> <td>100%미만 75%이상</td> <td>75%미만 50%이상</td> <td>50%미만 25%이상</td> <td>25%미만</td> </tr> <tr> <td>점 수</td> <td>2.0</td> <td>1.7</td> <td>1.4</td> <td>1.1</td> <td>0.8</td> </tr> </table>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개발실적	[15] (4)	<p>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5년이하</td> <td>5년초과 10년이하</td> <td>10년초과 20년이하</td> </tr> <tr> <td>특 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r> <td>전력신기술</td> <td>100%</td> <td>80%</td> <td>-</td> </tr> </table> <p>※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p> <p>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p>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2) 기술개발 투자실적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구 분</td> <td>3%이상</td> <td>3.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td> </tr> <tr> <td>점 수</td> <td>8</td> <td>7.2</td> <td>6.4</td> <td>5.6</td> <td>4.8</td> </tr> </table>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8	7.2	6.4	5.6	4.8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8	7.2	6.4	5.6	4.8										
	(3) 교육실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설계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원수)× 3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5점 												
마. 업무 중첩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5점씩 감점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1점씩 감점 												
	(1) 책임기술자	(6)													
	(2) 참여기술자	(4)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 상 훈	○ <삭 제>
	(2) 교육훈련	○ <삭 제>
감점	부실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별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의 누계평균 부실별점에 따라 감점

※ 비고 : 위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 1-1]과 같음.

[부표 1-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전력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함.

- 가. "참여전력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은 책임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의 자격종목에 따라 평가하고, 참여기술자는 영 제3조 별표 1의 전력기술인의 등급별 및 참여인력에 따라 차등평가함.
- 나. "참여전력기술인의 경력"은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기본설계. 실시설계.설계감리 등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 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함.
- 다. "참여전력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용역의 종류(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가능),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함.
- 라. 참여전력기술인이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 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업무를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감독의 경력 및 실적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경력 및 실적만을 인정함.

2.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설계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함.

- 가. 발주자는 유사용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함.
- 나. 발주자는 유사한 전력시설물 설계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 다. 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은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함. 다만, 신규.합병.사업 양수도를 한 설계업체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함.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다.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설계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함.

가. 개발실적 평가

: 개발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히 및 실용신안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설계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함.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함.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함.

(3)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 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함.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설계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함.

5. "업무중첩도"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함.
6.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별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누계평균부실 별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함.
7. 발주자는 당해 설계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별표 1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설계용역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별표 4]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 가. "부실벌점"이라 함은 설계업.감리업체(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설계용역의 참여전력기술인 및 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 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부표 4-1 및 부표 4-2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함.
-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이라 함은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함.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 가. 측정기관은 부표 4-1 및 부표 4-2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함.
- 나.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함.
- 다.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의 각각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에 적용할 수 있음.
- 라.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다음과 같이 감점함.
 - (1)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2)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3)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점
 - (4)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점
 - (5)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점
 - (6) 20점 이상인 경우 : 5점

3. 부실벌점의 부과 및 관리기준

- 가.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부실벌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적된 내용이 부표 4-1 및 부표 4-2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함.
-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

[부표 4-1]

설계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 (설계업체 및 책임기술자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였으나 조사 및 협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2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산출의 소홀(해당 공종의 참여전력기술인에 한한다) - 설계수량 산출의 소홀로 인하여 공종별로 10%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 2 - 설계수량이 공종별로 10%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의 작성 소홀 -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 - 설계도서간의 불일치, 일부누락 또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2 -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현장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재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의 부실 초래 - 주요 기자재의 선정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3 - 주요기자재의 품질·규격 등 적합성 검토 소홀로 인하여 기자재의 재선정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 참여예정기술인이 용역 과업수행시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3 - 참여기술인의 업무범위 및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업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된 참여전력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 (설계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참여전력기술인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3 - 동일자격 참여전력기술인을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교체한 경우 2 	

자체평가 계산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참여업체 계산결과	발주기관 계산결과
참여 전력 기술인(50)	책임기술자 (30)	자격	5		
		경력	10		
		유사용역실적	15		
	참여기술자 (20)	자격	5		
		경력	5		
		유사용역실적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실적금액	10		
		실적건수	5		
신 용 도 (10)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설계업체	4		
		참여전력 기술인	3		
	재정상태 건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4		
	기수개발 투자실적		8		
	교육실적		3		
업 종 무 도 첨 도 (10)	책임기술자		6		
	참여기술자		4		
합 계			100		
감점	부실벌점		5		
총 계					

<별지 제1호 서식>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작성기준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공란에 자유 양식으로 해당 업체의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이해도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 가.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 나. 제출장소 : 서울교통공사 구매조달처(1층)
-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1부 (밀봉제출)

2. 제출서류 작성 방법

- 가. 규 격 : A4 (210mm / 297mm)
- 나.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3. 제출서류 명세

- 가. 규 격 : A4 (210mm / 297mm)

-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 2)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1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업 등록증 1부 또는 기술사사무실 개설 등록증 1부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공동도급시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첨부)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중 참여의향서(과업이해도, 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접근방식의 창의성)는 별도로 밀봉하여 3부를 제출하며,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이나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표기하지 말아야 함
- 3) 별도 양식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 표/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한국엔지니어링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 증명서 등 첨부

나. 제본순서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서식(양식1)
- 2) 참여신청서(양식2)
- 3)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업 등록증, 기

술사사무실 개설 등록증

-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양식3) - 해당될 경우만 제출
- 5)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양식4) - 해당될 경우만 제출
- 6) 참여기술자 유사 사업 수행실적(양식5)
- 7) 참여기술자 업무중첩도(양식6)
- 8)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양식7)
- 9) 보유기술현황(양식8)
- 10)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양식9)
- 11) 재정상태 건실도(양식10)
- 12) 자체평가 계산표(양식11)
- 13) 각서(양식12)
- 14) 기술자보유증명서(관련협회 양식) :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현황
※ 제출서류 각양식 뒷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본하여야 함

다. 기타사항

- 평가서 제출 시 대표이사의 직인으로 봉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 본 작성요령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만일 첨부하지 않아 평가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및 첨부된 증빙 서류상 내용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 위조, 변조, 허위, 오기, 기입 후 정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특히, 참여 기술자 업무 중첩도는 별도 조사 사항으로 누락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취소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
-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 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 평가 항목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양식 1]

접수번호	
------	--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

용역명 :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
시스템구축 설계 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양식 2]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서울교통공사 사장

참 조 : 구매조달처장

제 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 시스템구축 설계 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양식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
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
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2. ○○○회사(대표자: 소재지:)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
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
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
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
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양식 4]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분담이행						
계					100%	

[양식 5]

참여기술자 유사 사업 수행실적

성명		사업명 (용역)	사업기간		참여기간		발주기관	
			착수일	종료일	배치일	종료일	해당부서	연락처
사업 책임기 술자								
		소계	일		일			
분야별 책임기 술자								
		소계	일		일			
참여 기술자								
		소계	일		일			
		소계	일		일			
		소계	일		일			
		소계	일		일			

- 발주기관에 대한 사항은 사업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의 부서명,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하며, 발주기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미기재 시 무효 처리
-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 명시

※ 증빙서류 : 1.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보유증명서
 2.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력증
 3.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
 4.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양식 6]

참여기술자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업무(용역) 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사업명(용역)	발주부서	사업비 (백만원)	참여기간		
					배치일	종료일 (예정일)	
사업 책임기 술자							
		소 계	건				
분야별 책임기 술자							
		소 계	건				
참 여 기술자							
		소 계	건				
		소 계	건				
		소 계	건				
		소 계	건				

- 평가 대상 참여 기술자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 평가 대상 참여 기술자의 업무 중첩도는 별도 조사를 하는 평가사항 으로 누락이 발생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정확히 작성

[양식 7]

회사 유사 사업 용역 수행 실적

업체명	사업명(용역)	금액 (백만원)	발주 기관	용역기간 (년/월/일)		지분율 (%)
				착수일	준공일	
	소계					일

- 최근 5년 이내 발주청이 지정하는 유사 사업으로, 설계용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
- ※ 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또는 해당 발주 기관 발행하는 실적증빙자료 첨부
-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 명시

※증빙서류 : 사업(용역) 수행 실적 확인서(관련 협회 혹은 발주 기관 발행)

[양식 8]

보유기술현황

○ 개발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등록일시 (출원일)	경과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소 계				
	소 계				
계					

- 해당용역과 관련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 작성
-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이 인정하는 기술만 평가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인정,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인정
- 보유 기술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명시
- 아래의 붙임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 제출

- 증빙서류 : 1. 신기술 : 신기술 지정서
 2. 특허 : 특허증, 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서
 3. 실용신안 : 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서

[양식 9]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업체명 또는 기술자성명	정지 또는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점수
	~				
	~				
	~				
	~				
	~				
	~				
	~				
	~				
	~				
계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관련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
-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명시

증빙서류 : 협회 혹은 각 관련 기관의 확인서.

[양식 10]

재정상태 건설도

구 분	기 재 사 항			
1. 회 사 명				
2. 경영실적	업체 지표 (2017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합)) 평균(2017년)	비율(%)	점수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표 참조		

- 비율(자기자본비율) = [업체 지표(비율)]÷[엔지니어링서비스업 또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합) 평균 비율] (2017년)
- 비율(유동비율) = [업체 지표(비율)]÷[엔지니어링서비스업 또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합) 평균 비율] (2017년)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 기간 이내의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 아래의 붙임 서류에는 2017년도(최근년도) 업체의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증빙서류 :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확인한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양식 11]

자체평가 계산표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항목별 배점	참여업체 계산결과	발주기관 계산결과	
가. 참 여 기 술 자 능 력	가)경력	(1)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 책임기술자	7			
			분야별 책임기술자	6			
			참여 기술자	5			
			소 계	18			
		(2) 전문화 정도	사업 책임기술자	7			
			분야별 책임기술자	6			
			참여기술자	5			
			소 계	18			
	(3) 업무 여유도	사업 책임기술자	7				
		분야별 책임기술자	6				
		참여기술자	5				
		소 계	18				
	나)사업 수행자의 용역사업수행 기술인력의 잔류여부				2		
	소 계				56		
나. 업 체 능 력 및 신 용 도	가)경력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19			
	나)보유기술			5			
	다)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3			
	라)재정상태 건실도			9			
	마)도시철도에서 수행한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2			
	소 계			38			
다. 참 여 의 향 서	가)과업이해도			2			
	나)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2			
	다)접근방식의 창의성			2			
	소 계			6			
총계				100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내용을 참조하여 계산 (전력분야는 별도 작성할 것)
- **참여의향서와 상대평가 항목 란은 기재하지 말 것**
- 계산과정의 모든 수치는 (양식)에 기재한 수치와 일치해야 함
- 발주기관 계산결과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양식 12]

각 _____ 서

■ 사업명 :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 시스템구축 설계 용역

본 업체는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 시스템구축 설계 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 하오며, 다음 사항은 물론 본 점검의 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결과 등에 대하여 일체 이의 제기를 아니할 것을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1. 제출양식 내용 기재나 확인 증빙 서류의 판단 등에 차이가 있을 시 발주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한다.
2. 작성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감수한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